

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8월 28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,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(조례 제2030호, 1993. 3. 26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 <'06. 1. 1시행('05. 8. 4 전부개정)>

제95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①회계관계공무원(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<'06. 1. 1시행('05. 12. 30 전부개정)>

제138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^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·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
< 개정전 법률 >

□ 지방재정법 <구 법령 조문 : '05. 12. 31일 이전>

제116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.